

광주지방법원 2023. 10. 25 선고 2023나7209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3. 10. 25 선고 2023나72096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가단689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나주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

변론종결 2023. 9. 13.

판결선고 2023. 10. 25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. 1. 13. 선고 2022가단689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도로 38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4. 2. 13. 접수 제3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연경, 판사 남수진, 판사 이미주